V 가치경영을 위한 과제

1. 가정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 확립

가. 개요

앞장에서 IFRS17의 경영전략적 유인을 보험영업관리, 손익, 자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보험계약마진이 높은 상품위주 영업, 마진 상각에 따른 손익 발생, 손익평가를 반영한 자본관리 등 이러한 경영전략은 보험부채 평가 가정에 기반을 둔다. 과거에는 감독회계에서 규정 중심의 방법을 제시하고 일반회계에서 이를 준용하였지만 이제는 감독회계도 원칙 중심으로 변화하여 보험회사가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정으로 경영활동이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였다.

감독회계는 IFRS 전면 도입국이라는 제약 조건하에서 비용(회사부담) 대비 효익(감독효과) 극대화, 일반회계와 감독회계간 조화 추구라는 원칙[48]에 따라 사업비율, 해약율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해 원칙 중심의 산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가정산출 원칙으로 보험회사가 내부 및 외부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하되 내부정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외부 정보 이용의 합리성 등 요건 충족 시 외부 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계리적 가정에 대한 산출기준은 매 회계연도별로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서 보험제도 및 경영환경의 중요한 변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산출기준 변경이 가능하고 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용된 최근 가정과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업비율, 해약률, 위험률 등 계리적 가정에 대해 원칙과 최소한의 세부 기준만을 제시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가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업비 회계처리의 경우에도 현행 감독회계는 실제 사용한 신계약비에 대한 최대 이연기

48)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21)

간(7년)과 한도가 제시되고 사업비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을 제시하나 개정된 감독회계는 사업비 배분 및 분류 기준을 회사의 정책에 따라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책임준비금 산출과 관련하여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 등을 작성하고 작성된 문서의 작성자·검토자·승인자를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회계정책서는 IFRS17에 따라 책임준비금 산출함에 있어 회사가 선택한 회계정책 및 해당 정책의 선택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며 계리방법서에는 책임준비금 하위 계정인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보험료배분접근법 평가 시 적용한 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표 V-1〉 계리적 가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사업비율	• (원칙) 경험통계 기반으로 미래 사업비 정책, 보험금 지급 정책의 변화 및 효율성,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 • (세부 기준) 보험취득 현금흐름, 계약유지비, 손해조사비, 투자관리비로 구분하고 판매채널의 특성 반영하여 구분 산출
해약률	• (원칙) 경험통계 기반으로 경과기간별 구분 산출 • (세부 기준) 계약자옵션, 가입연령, 가입 후 경과기간, 납입방식, 판매 채널 등 세칙에서 제시하는 요소 등을 고려
위험률	• (원칙)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경과기간별로 구분하며, 보장하는 위험담보별로 산출 • (세부 기준) 사망, 생존, 일반손해보험 등으로 구분하고 연령, 성별, 직업 등 세칙에서 제시하는 세부요소 등을 고려
보험료	• (원칙) 경험통계와 미래추세를 고려하여 보험료에 대한 합리적인 가정 설정 • (세부 기준) 보험료 추가납입, 납입면제, 중도인출 등 반영 가능
계약자 행동	• (원칙) 계약자행동 가정(실효·해약 등 계약자 옵션 행사에 대한 가정)은 과거 계약자행동에 기반을 두어 산출 • (세부 기준) 금융시장 상황, 회사 대고객정책을 반영하여 산출
경영자 행동	• (원칙) 경영자행동 가정(자산투자전략, 이익금의 분배, 계약자배당 정책, 사업비 정책 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결정 • (세부 기준) 회사가 대외적으로 공시한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

자료: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2021)

감독회계가 사업비, 해지율 등을 포함한 계리적 가정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원칙 중심으로 변경되어 보험회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다양한 검증 프로세스가 추가되었다.

보험업법[49]에서 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자체 검증을 강화하고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한 외부 검증[50]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림 V-1〉 보험부채 검증 프로세스

나. 개선사항

이러한 원칙 중심의 감독회계 대응을 위해 보험회사는 가정관리 프로세스 확립 및 관련 자료를 문서화하여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IFRS17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상품개발 등 부서가 포함된 가정관리위원회 운영, 가정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집적 및 관리 등 가정관리 프로세스 확립이 중요하다.

또한 보험부채평가는 선임계리사를 통한 자체 검증과 더불어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을 통한 적정성 검증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무표준 등을 활용한 업계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보면 많은 회사들이 업계 공통의 실무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일본 금융청(2022)은 원칙론적 보험부채평가는 보험회사의 자주적인 리스크관리 고도화 촉진이 기대되나 회사 간 비교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내부 검

49) 보험업법 제181조(보험계리), 제181조의 2(선임계리사의 임면 등) [시행일 2023. 7. 1]
50)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의 2(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증체계 정비, 외부 검증의 제도적 위치 설정 등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부채 평가기법과 관련된 일정한 통일성 또는 방법론 선택 시 유의점 등을 고려하고 보험부채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검증방법 및 프로세스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할 때 해외와 유사하게 업계 전문가(보험계리사회 등)를 활용한 실무표준 작성으로 업계 공통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계리사회는 다양한 계리 이슈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회사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국내는 기존에 3개의 실무표준(보증준비금,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만 존재하였다. 최근 보험계리사회가 실무기준을 제정[51]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이고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보증준비금은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감독회계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헤지효율에 따라 준비금을 경감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위해 헤지효율 평가방법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LAT에 대한 실무표준은 계리적 가정별로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는 세부 내용을 제도 변화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는 기존과 유사하게 유지될 수 있으나 보증준비금,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에 대한 실무표준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51) 한국보험계리사회 보도자료(2021. 11. 8), "한국계리실무기준(KSAP) 제4호 및 IFRS17 계리적 가정 실무기준 제정"

〈그림 V-2〉 실무표준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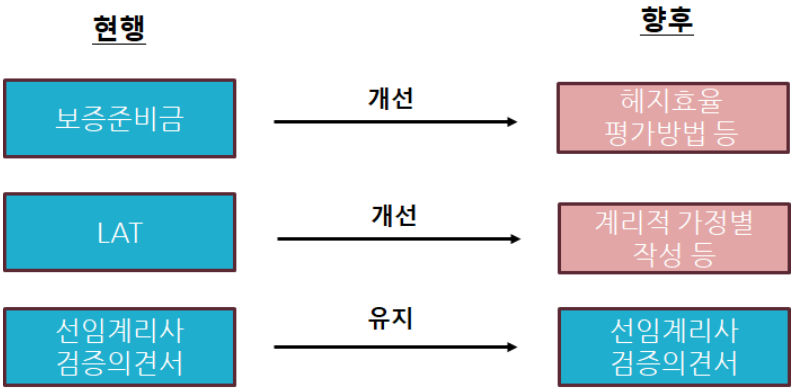

2. 자본 관리 효율성 제고

가. 개요

보험회사는 IFRS17, K-ICS 제도 대응을 위해 장기채 매입, 파생상품 활용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금리변화에 민감한 보험부채를 조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자본관리가 될 수 있다. 자본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약 이전, 계약 재매입, 공동재보험 등 부채 구조조정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설문조사에서 보험회사들이 제도 도입 및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부채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나. 개선사항

1) 계약 이전

계약 이전은 대상 계약의 자산과 부채를 타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에 의한 '강제적 계약이전'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임의적 계약이전'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강제적 계약이전’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회사가 부실화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요건하에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임의적 계약이전’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하에 보험계약 전체나 책임준비금 산출 기초가 같은 계약에 대해서 다른 보험사로 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이전 대상계약 보험계약자 총수의 1/10 또는 보험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보험계약을 이전하지 못하는 제한[52]이 있다.

국내는 2003년 하나생명의 계약 이전 사례가 존재한다. 하나생명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방카 전문회사 변환 목적으로 보험계약 중 일부를 ABL생명(당시 알리안츠 생명)에 이전하였다.

〈표 V-2〉 계약 이전 세부 내용

인가일자	2003. 5. 16
이전대상 보험계약	보유계약 32종목 19,057건(책임준비금 680억 원) 中 20종목 17,809건(책임준비금 464억 원)으로 2002년 말 준비금의 68%를 이전함

자료: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03. 5. 16), “하나생명보험(주)의 보험계약 일부이전 인가안 신청개요”

해외 사례[53]를 보면 대만의 생명보험사인 대만 알리안츠는 대만 China life에 계약을 이전하였다. 대만 알리안츠는 다년간 지속된 손실로 인한 자본관리목적이었으며, 대만 China Life는 규모 증대와 위험 관리라는 이해관계가 맞아 2018년 5월에 진행되었다. 대만 알리안츠는 영업이익이 2017년까지 손실이었으나 2018년부터 이익으로 전환되었고, 대만 China Life는 시장점유율이 2017년 6%에서 2018년 8.6%로 증가하였다.

52) 보험업법 제 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53) 노건엽·김석영·손민숙(2021)

〈그림 V-3〉 대만 알리안츠 영업이익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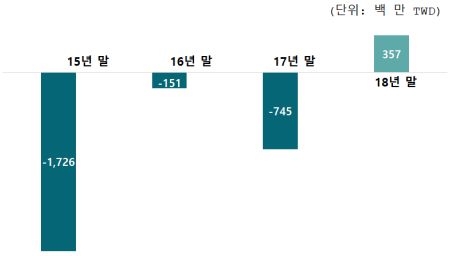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2019)

〈그림 V-4〉 RBC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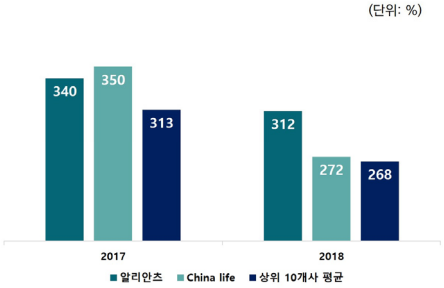

자료: 보험개발원(2019)

계약 이전은 협소한 의미의 M&A로 거래참가자가 보유한 정보의 차이로 인해 보험부채 평가 차이가 생기면 거래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거래참가자 간 경쟁우위, 특성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약이전 거래 유인이 발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거래유인 발생이 가능한 대상 계약과 거래상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계약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Run-off 포트폴리오[54]를 이전하는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Run-off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가 보험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진입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사모펀드 및 재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Run-off 플랫폼들이 전체 보험시장 자산의 약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계약 재매입

계약 재매입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한 계약을 다시 매입하여 보험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장부가치(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불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계약을 매입할 수 있다.

벨기에 생명보험회사들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고금리 보증계약에 대한 계약 재매입을 실시하였다. Ethias는 정책당국에 의한 강제조치의 일환으로 실시한 반면, AXA Belgium는 신제도(Solvency II) 도입에 따른 경영대응으로 실시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Ethias는 벨기에 내 2007년 기준 시장점유율 13%, 110만 계약자를 보유한 보험그룹으로

54) 계약인수 및 갱신은 중단하였지만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계약을 의미함

생명보험회사, 배상책임 및 산업재해보장 보험회사가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실로 인해 15억 유로 규모의 공적자금을 지원받고 경영진 교체, 상품 개정 등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

Etias와 AXA Belgium은 저축성상품 중 2000년 이전 계약에 대해 계약 재매입을 시행하였고 해지환급금에서 10~30%를 추가적(프리미엄)으로 제시하였다. 보험계약자 중 관심 있는 자는 보험모집인에게 연락하며, 보험모집인은 자문만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계약 재매입의 승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 재매입이 진행되고 제출 후 취소는 불가능하다.

〈그림 V-5〉 계약 재매입 절차 예시(AXA Belg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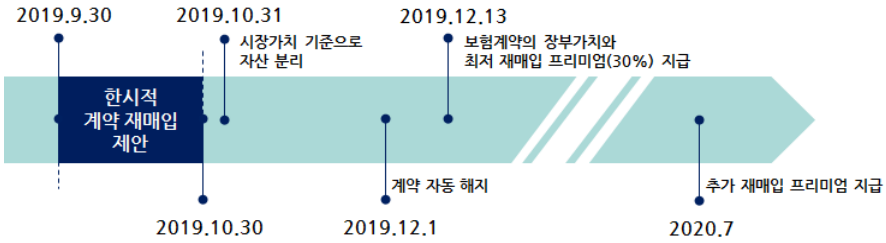

자료: AXA Belgium(2019)

Ethias는 4차례의 계약 재매입을 통해 고금리 보증계약 준비금의 94% 이상을 축소시키고 듀레이션 갭이 축소되어 Solvency II 지급여력비율이 67%p 상승하였다. AXA Belgium은 2016년에 실시한 계약 재매입에서 고금리 보증계약 보유 보험계약자 중 2/3가 계약 재매입을 신청하였다.

〈그림 V-6〉 Ethias의 개인 생명보험 부채 추이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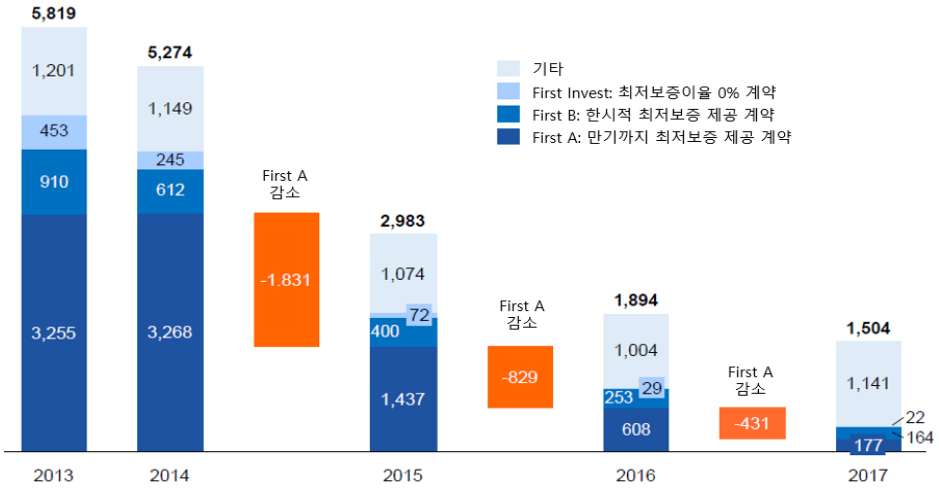

자료: Ethias(2018)

계약 재매입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행위 규제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이해와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 재매입으로 인해 단기간 내 대규모 자금 유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공동재보험[55)]

공동재보험(Coinsurance)이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등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뿐만 아니라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을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보험위험만 이전한다.

55) 노건엽·김석영(2020)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그림 V-7〉 전통적 재보험과 공동재보험 비교

공동재보험은 보험위험 외에 금리위험을 포함한 다른 위험까지 재보험사에 출재가능하며 1년 이상 장기로 계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동재보험은 자산 및 부채가 전부 재보험사에 이전되는 형태 외에 부채만 이전되는 변형된 계약도 가능하며, 국내는 현재 두 가지 형태의 계약이 모두 허용된다.

일반적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운용자산과 책임준비금(부채)을 모두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 형태를 이해하기 쉽고 재보험사 자산운용능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재보험 거래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이 존재하고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투자를 통제할 수 없어 계약자 배당 등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다.

한편 변형된 공동재보험(Modified Coinsurance)[56]은 원보험사가 보유한 책임준비금만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재보험 거래로 인한 거래상대방 위험이 감소되며 원보험사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므로 투자 의사결정에 제약이 없으나 계약 형태가 복잡해질 수 있다.

해외 보험회사들은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의 금리 위험, 변액보험이 내포한 최저보증에 대한 위험 등 다양한 계약형태의 위험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공동재보험을 활용한다.

금리확정형 연금보험은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라 준비금을 조정하고 원보험사는 변동 이자를 재보험사에 지급하여 금리 위험을 전가할 수 있다. 변액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GMDB), 최저적립금보증(GMAB)에 대한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

56) 유럽식 공동재보험(European coinsurance) 또는 자산예탁 공동재보험(Coinsurance with funds withheld)을 말하며 자산, 부채 이전이 없는 미국식 변형된 공동재보험(American Modified Coinsurance)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

〈그림 V-8〉 상품별 공동재보험 사례

〈금리확정형 연금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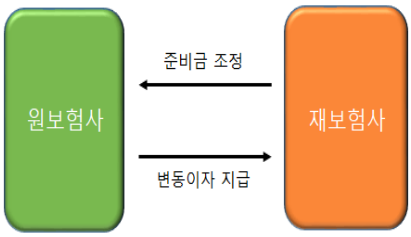

〈변액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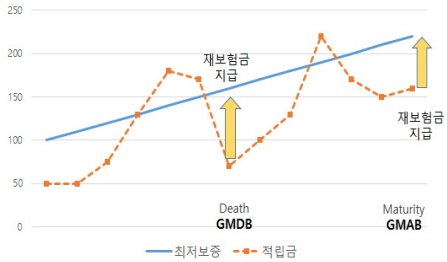

자료: 노건엽·김석영(2020)

이러한 공동재보험은 출재비율에 따라 위험이 이전되는 '비례재보험' 방식의 제도가 국내에 도입되어 생명보험회사 3개사[57]가 이미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재보험 방식만 허용되고 있어 '비비례재보험' 같은 다양한 형태를 허용하여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공동재보험이 좀 더 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57) ABL생명 100억 원(2021. 3), 신한라이프 2,300억 원(2022. 1), 삼성생명 5,000억 원(2022. 11)